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25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6264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원고, 항소인	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	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	소송복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	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9. 10. 11. 선고 2019구합54573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12. 19.
판 결 선 고	2020. 1. 1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8. 16.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25

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